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1. . .	
연 월 일	(제 회)	

김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이 필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 청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 라.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을 정하고, 김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함

(안 제8조 · 제9조)

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요건, 진흥구역 평가 및 조지 등 진흥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김 양식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함(안 제14조제2항)

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14조제4항)

자. 김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14조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2) 입법예고 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양식·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생산·양식·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업(業)을 경영하는 자
2. 김을 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 또

는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

4. 그 밖에 김산업 발전과 김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을 경영하는 자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김 양식 품종과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 제품(김과 김 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위생안전성 확보와 제조·가공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산업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김산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6. 법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4.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김산업 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과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김 제품의 수급안정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김산업 종사자
2. 김 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등의 개선을 추진하거나 김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김산업 종사자
3. 김 제품의 품질향상,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김산업 종사자

4. 그 밖에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김산업 종사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1. 김 양식 품종과 기술 개발 등 김 양식의 생산성 향상
2. 김 제품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3.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4. 법 제18조에 따른 김 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5. 김 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
6. 그 밖에 김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
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김 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 제품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 제품의 세계화 촉진을 위하여 김 제품의 판매점·체험관 등을

해외에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 제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그 밖에 김 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법 제17조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김산업진흥구역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역 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김 양식 가능한 면적이 1,000 ha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마른김 가공시설이 5개소 이상이거나 연간 마른김을 8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등) ① 김산업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 진흥계획서

3. 김산업 지정 신청사유서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인접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산업 관련 학계,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관련 사업의 결합 등을 통한 김산업의 성장 여건 조성의 연차별

계획

2.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3. 해당 지역의 연차별 김 제품 생산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련 항목의 연차별 계획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및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 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위생안전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제조 및 보관 시설 개선

2. 김 제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적 상담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김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 제품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 지정된 진흥구역의 조정 또는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2. 제1호에 다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산업 진흥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김 양식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 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김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과 제조·가공공

정 등에 관한 연구·조사

3.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김 제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김 품종별 가공특성, 품질향상 및 가공기술 개발 등의 연구·조사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1. 12. 23.부터 시행한다.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 나. 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1) 실습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 라.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마.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 바.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 가. 김의 생산·양식 기술 관련 교육과정
- 나. 김 제품의 가공·제조·포장·저장 기술 관련 교육과정
- 다. 김 제품의 품질관리·위생안전 관련 교육과정
- 라. 김 제품의 소비·요리 관련 교육과정
- 마. 그 밖에 김 제품과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김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제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교육시설과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실험실

1) 면적 : 60제곱미터 이상이고, 필요시 불연재의 칸막이 사용이 가능할 것

2) 교육장비 : 사상체 배양 챔버,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UV), 해수펌프, 해수필터, 멸균기(Autoclave), pH meter, 염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 유전자증폭기(Gradient PCR, qRT-PCR 등), 무균작업대(Clean Bench), 초저온 냉동고, 전기영동기,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건조기, 조단백질측정기, 회화로, 이물측정 장비 등을 갖추어 것

라. 화장실: 남녀 구분이 있고,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

마.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바.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사.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을 하나 이상 운영할 것

가. 김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김산업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

다. 김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김산업 경영 교육과정

마. 김산업 마케팅 교육과정

바. 김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

사. 김 제품의 품질향상,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김 제품 생산·가공·제조·조리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자. 그 밖에 김 제품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실습시간을 포함한다): 교육과정별 40시간 이상일 것

4. 전문 교수요원: 다음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갖출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김산업 관련 현장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평가관리: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평가할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5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